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37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복기왕 · 전용기 · 임호선
정태호 · 김우영 · 이상식
박홍배 · 김한규 · 위성곤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공익신고등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를 “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를 “위원회”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내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신고등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문서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 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 관(<u>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u> <u>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u>) 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 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u> -----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호 · 지원 안내) ① <u>제</u> <u>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u> <u>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u> <u>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u> <u>사 · 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u> <u>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u> <u>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u> <u>한다.</u>	제9조의2(보호 · 지원 안내) ① <u>위</u> <u>원회</u> ----- ----- <u>마련하여야</u> -- ---.
1. ~ 8. (생 략) <u><신 설></u>	1. ~ 8. (현행과 같음) ② <u>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u> <u>에 해당하는 자 및 공익침해행</u> <u>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u>

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
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
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
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
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② ~ ④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
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은 지체
없이 그 문서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등-----
-----.

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
은 지체 없이 그 신청을 위원
회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2. (생략)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③ (생략)	항까지와 같음)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5항----- ----- ----- 4.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제22조제4항----- ----- ----- ----- -----. ② ③ (현행과 같음)
---	--